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7.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0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신동명)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에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

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

- 수취액에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제2항)
 - 수취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는 신고기한을 7년으로, 1억원 이상의 경우 15년으로 설정.
-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제3조제1호~제3호, 제7조제6항, 제9조제2항)
 - “공무원 등” 을 “공무원등” 으로 변경.
-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13조제3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 8. 7.~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장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패정도가 심한 비위면직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발생비율이 높음에도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한정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 등 단기로 설정하여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신고기한을 짧게 규정하거나 주민 등으로 신고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는 바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바 신고보상금 제도는 행정조직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규제대상의 광범위에 따른 행정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구에 신고보상금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권고사항	대상여부
①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 임원선임 및 위촉선임 동의추천 등을 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임직원 포함	개선대상
②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개선대상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공무원 등’ 을 각각 ‘공무원등’ 1)으로 약칭 용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1) <예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이하 생략)

- 안 제2조(정의)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1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제1호가목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상근인력을 포함한다)’ 으로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짐. 제1호다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²⁾ 규정에 제1호나목 ‘공단’ 이 포함되어 있는 바 나목과 중복 규정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제1호라목의 규정은 현재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신고대상) 중 ‘공무원 등’ 을 ‘공무원등’ 으로 각각 약칭 용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신고기한)제2항의 신설규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³⁾에 규정된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소송법」⁴⁾에 따른 공소시효를 신고기간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6.~7. (생략)

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다만, 사법적 판단의 공소시효와 중대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판단됨. 아울러 수뢰액⁵⁾은 뇌물죄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져 공금횡령도 중대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예시>⁶⁾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제6항 및 제9조(보복행위 금지)제2항 중 “공무원 등” 을 약칭 용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안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제3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중복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임.

- 안 부칙 제2조(경과규칙)는 “(경과조치)” 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5) 수뢰액(受賂額): 뇌물로 받는 액수

6) <예시>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비위가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4조제2항에서 뇌물 수수의 경우는 개정안에 의해 신고기간이 연장되지만, 공금횡령의 경우는 이에 제외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 개정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에 문제가 없다면 공금횡령도 안 제4조의 신고기한 연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00호

제안일자 : 2020.9.17.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조리 신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입법형식에 맞게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입법형식에 맞게 조항의 자구 수정(안 제2조)
- 부조리 신고 범위 확대를 위하여 조항 내용 수정(안 제4조제2항)
- 안 부칙 제목 수정(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다음과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을 “사람을” 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 을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중대비위가 3천만원 이상” 으로 한다.

안 부칙 제목 “경과규칙” 을 “경과조치”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공무원등”이란 <u>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가.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u></p> <p style="padding-left: 2em;">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u>임직원</u></p> <p style="padding-left: 2em;">다. <u>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p> <p style="padding-left: 2em;">라. <u>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과 같다.</u></p> <p>1. “공무원등”이란 <u>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p> <p style="padding-left: 2em;">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p> <p style="padding-left: 2em;">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p> <p style="padding-left: 2em;">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p>

는 기관·단체 중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의 임직원

2. (현행과 같음)

3. ----- 공무원등
의 -----

-----공무원등을-----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중대비위의 경
우에는 7년, 1억원 이상
의 경우에는 15년이 되
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는 기관·단체 중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의 임직원

2.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① (개
정안과 같음)

② ----- 단서조항에
도 불구하고 제1항의
중대비위가 3천만원 이
상-----

-----.

부 칙

제1조(시행일) -----

-----.

2. (생략)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생략)

제4조(신고기한) (생
략)

<신설>

제2조(경과규칙) 제2조
및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신고분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년월일 : 2020. 9.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나. 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호)

-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에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

나. 수퇴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 제2항)

- 수퇴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는 신고기한을 7년으로, 1억원 이상의 경우 15년으로 설정.

다.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제3조제1호~제3호, 제7조제6항, 제9조제2항)

- “공무원 등”을 “공무원등”으로 변경.

라.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13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0.8.7. ~ 2020.8.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를”을 “공무원등의 부조리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 등의”를 “공무원 등의”로, “공무원 등을”을 “공무원등을”로 한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공무원 등”을 각각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의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공무원 등”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무원 등”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칙) 제2조 및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신고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u>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u>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u>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공무원 등</u>”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 <u>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u>----- ----- ----- ----- <u>공무원등의 부조리를</u> ----- ----- -----.</p> <p>제2조(정의) ----- -----.</p> <p>1. “<u>공무원등</u>”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p> <p>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p>

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생략)

제4조(신고기한) (생략)

<신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
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⑦ (생략)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생
략)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들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공무원등-----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의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의 경
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
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공무원등-----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등-----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② (생략)

③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부조리 신고대상자 범위확대 및 수뢰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 신고기한 신설에 따라 보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등이 증가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인 사업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우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제3항 제1호의 “예상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행정7급 김기훈(02-3423-5143)